

##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창의적 도전, 일자리 창출, 혁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지원개요

#### < 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 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기업 성장 촉진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1,922	1년	2	80%	1,2,3,5,7월	1,3,4,6,8월	2~10월
		기술창업투자 연계과제	805	2년	5	80%	1월	1~11월	2~11월
	기술혁신개발	수출기업기술개발	940	2년	6	65%	1,4월 2월	2,5월 3월	3~4,6~7월 4~5월
		혁신형기업기술개발	1,329	2년	5	65%	1,4,7월 3,5월	2,5,8월 4,6월	3~4,6~7 ,9~10월 5~6,7~8월
		제품서비스기술개발	83	1년	2	65%	2월	4월	5~6월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356	1년	0.5	75%	1월	1,4,8월	2~10월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88	1년	1	75%	1월	2,7월	3~10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지원	WC300프로젝트 R&D지원	653	5년	75	50%	1월	2월	4월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재도전 기술개발	38	1년	1.5	80%	1월	1~2월	3~5월
		사업전환 기술개발	8	1년	1.5	75%	1월	1~2월	3~5월

구분	세부사업명 (수행기관)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생태계 활성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첫걸음협력		387	1년	1	75%	'17.12월	2,7월	3~11월
		도약협력		308	1년	1	75%	'17.12월	2,7월	3~11월
		전략협력	산연전용	594	1년	1.5	75%	'17.12월	기관 1월 과제 4,8월	기관 2월 과제 5~9월
			연구마을		2년	2	75%	'17.12월	기관 1월 과제 4,8월	기관 2월 과제 5~9월
			지역유망		2년	4.5	75%	'17.12월	3월	6월
		연구장비공동활용 (장비이용료)		106	1년	0.3	60~ 70%	'17.12월	수시	수시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구매 조건부신제품개발		1,438	2년	10	60~ 75%	'17.12월	1~8월	~9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153	2년	6	65%	2월	2~3월	3~4월
		기술전문기업협력		111	1년	1	65%	1월	1~2월, 6~7월	3~5월, 8~9월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 기획지원	멘토링과제	57	2개월	0.05	80%	3,6월	3~4월 6~7월	5월 8월
			전략과제		4개월	0.26	75%	2,5월	2~3월 5~6월	5월 8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1	9개월	0.3	50~ 75%	3,6월	3~4월 6~7월	5월 8월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주력산업육성		850	2년	3	70%	'17.12월	1월	3월
		지역연고산업육성		255	2년	5	70%	'17.12월	1월	3월
	인력 인프라	기술혁신형중소 기업연구인력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100	3년	-	50%	1월	수시
연구인력 채용지원			146	3년	0.5	50%	1월	3,10월	4~5, 11~12월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지역 중소·중견기업 R&D산업인턴 지원사업		43	1년	6	88%	1월	2월	2월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18	1년	예산 범위내	100%	1월	2,5,8월	4,7,10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포함)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 WC300 R&D 사업은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

## 1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주요 제도 개선내용

### ◇ 일자리 창출 중심 R&D 제도 개선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R&D 사업 참여 우대
-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 및 계획을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

### ◇ 창의·도전적 R&D를 집중 지원

-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 지정 (1월중 중소기업기술로드맵 별도 공지)
- 창업기업 전용예산 38% 증액 ('17년 1,976억 원 → '18년 2,727억 원)
- 혁신 창업과제 신설
- 연구비 비목 간 전용범위 확대, 성실실패 인정범위 확대

### ◇ R&D 첫걸음 기업 목표관리제 도입

- 저변확대형 (창업성장, 산학연, 제품서비스, 공정품질) 50%, 전략형 30%

### ◇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 촉진

-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연구소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지원

### ◇ 민간의 기술선별능력을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

- 벤처투자 유치실적 보유기업 R&D 사업 참여 우대
- 평가위원회 구성 시 벤처캐피탈(VC) 등 시장평가위원 참여의무화

### ◇ 수요자 맞춤형 R&D 제도 개선

- 기술개발수요 적기 대응을 위해 과제 신청·접수를 연중 분산
- 사업 신청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 제출서류 차등화
- 절차개선(현장조사 부담완화, 온라인평가 확대)을 통해 평가기간 최소화(5개월→3개월)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사항, 방법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3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4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 ※ WC300 R&D 사업은 지원대상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등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5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8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6 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 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중소·중견기업 기준에 따라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20%\* 납부
    -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20%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정부출연금의 12~24%\*\* 한도)
    -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2%
- \*\* 납부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7 지원제외 사항

-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 (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조

## 8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 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익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2.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총 19회)

구 분	지 역	주 관	일 시	비 고
중기부 주 관	서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3(화)	
	부산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1(목)	
		중소벤처기업부	2.6(화)	과기정통부 산업부 사업 설명 포함
	대구·경북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6(금)	
	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2(금)	
	경기	중소벤처기업부	1.24(수)	과기정통부 산업부 사업 설명 포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9(월)	
		경기북부사무소	1.31(수)	
	인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1(목)	
	대전·충남	중소벤처기업부	1.30(화)	과기정통부 산업부 사업 설명 포함
	울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7(수)	
	강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9(금)	
	충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6(화)	
	전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5(목)	
	경남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9(금)	
타부처 주 관 (부처합동설명회)	수도권(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수)~12(금) 송실대 한경직기념관	(중기부) 1.10(수)14:00~
	중부권(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5(월)~17(수) 국립중앙과학관	(중기부) 1.15(월)14:00~
	호남권(광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목)~19(금) 광주과학기술원	(중기부) 1.18(목)13:30~
	영남권(부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2(월)~23(화) 부경대학교 대학극장	(중기부) 1.22(월)13:30~

※ 부처합동설명회는 2~3일 동안 10개 부처에 대한 R&D지원 사업을 설명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 공지

### 3.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창업성장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 지원규모 : 2,727억 원 (신규 1,909억 원, 계속 818억 원)

##### □ 지원내용

① 창업기업과제 (1,922억 원) : 일반 및 혁신형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창업디딤돌과제 (1,393억 원) : 일반 창업기업 및 여성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 혁신 창업과제 (529억 원) : 고기술·유망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R&D, R&D+사업화·IP전략)지원

\* R&D : 글로벌지향형, 스피노프형, 기술도입형 및 R&D 집약형 등 4가지 유형의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R&D+사업화 : 창업 후 3~7년 기업으로 신청자격 요건 제한

②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805억 원) :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보육 전문법인), 크라우드펀딩 등이 선별, 투자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TIPS)과제 (764억 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크라우드펀딩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41억 원) :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술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창업기업 과제	디딤돌 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최대 1년, 1.5억 원 (최대 1년, 1억 원)	80% 이내	자유공모, 4차산업혁명 품목지정 (자유공모)
	혁신 창업과제	최대 1년, 2억 원 (최대 1년, 2억 원)		자유공모, 4차산업혁명 품목지정
기술창업투 자연계과제	민간투자 주도형 (TIPS)	최대 2년, 5억 원 * 바이오 분야 7억 원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최대 1년, 2억 원		



##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사업개요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혁신형기업 맞춤형 R&D지원을 통해 글로벌 선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규모 : 2,269억 원 (신규 586억 원, 계속 1,683억 원)

### 지원내용

#### ① 수출기업기술개발 (940억 원)

- 글로벌강소기업 (249억 원)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수출유망 (487억 원) : 최근 2년 내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한 번이라도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품목 기술개발 지원
- 수출초보 (204억 원) : 최근 2년 내 10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을 한 번이라도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품목 기술개발 지원

#### ② 혁신형기업기술개발 (1,329억 원)

- 혁신형기업 (1,137억 원)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품목을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또는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글로벌 스타벤처 (192억 원) :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추천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수출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6억 원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5억 원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 (3)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사업개요

-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 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 83억원 (신규 83억원)

지원내용

- ① 제품서비스화 (51억원):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제품의 서비스화 개발을 통한 신사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 ② 신규서비스창출 (9억원): 기술창업이 활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비즈니스모델 구현 지원
- ③ 업종공통서비스 (23억원): 본점과 지점, 복수의 사업장 보유 기업, 업종별 단체와 회원사 등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 지원

지원대상

- 제품서비스화: 중소기업 영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신규서비스창출: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업종공통서비스: 서비스기업 컨소시엄, 관련 협·단체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서비스화	최대 1년, 2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신규서비스창출	최대 1년, 1.5억원		
업종공통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 (4)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개요

- 기존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규모 : 444억 원

지원내용

- ① 제품·공정개선 (356억 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 (제품개선)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
- ② 뿌리기업공정 (88억 원)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높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에 대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제품·공정개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단,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뿌리기업공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공정개선	최대 1년, 5천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뿌리기업 공정	최대 1년, 1억 원	75% 이내	자유공모

## (5)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

사업개요

-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지원규모 : 653억원

지원내용

-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성장에 필요한 중장기 미래전략·원천 기술개발을 지원
- 금융, 보증, 지식재산권 (IP), 인력, 해외마케팅 등 연계지원

지원대상 : 매출액 기준 ①과 글로벌 지향성 기준 ②) 동시 충족

- ① 매출액 기준 : '16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17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00억원~1조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단, 시스템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매출 100억원 이상

② 글로벌 지향성 기준(아래 기준 중 한가지 충족)

- (일반기업 트랙)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혁신형 기업트랙)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4%이상
- (글로벌 전문기업 트랙) 최근 3년 직수출액 2천만불~1억불 1회 이상 경험 (단 직수출액이 5천만불 미만은 3년 평균 5%이상 직수출 증가율 충족)

R&D 지원 :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중 평가를 통해 지원

R&D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World Class 300 R&D 지원	최대 5년, 75억원 한도 (연간 15억원)	50% 이내	자유공모

## (6) 재도전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재기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적 자산의 사장방지 및 고용창출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

### 지원규모 : 46억 원

### 지원내용

- ① 재도전 R&D (38억 원) : 우수한 기술력·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실패 기업인에게 기술개발을 통해 R&D 역량 및 재기 강화
- ② 사업전환 R&D (8억 원) :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R&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

### 지원대상

- (재도전 R&D)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 (7년 이하) 또는 지원 결정이후, 1개월 이내 법인 설립이 가능한 자
- (사업전환 R&D)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한정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재도전 R&D	최대 1년, 1.5억 원	80% 이내	자유응모
사업전환 R&D		75% 이내	

## (7)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

### □ 지원규모 : 1,395억원

### □ 지원내용

- ① 첫걸음협력 (387억원): 정부 R&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 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일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R&D 지원
- ② 도약협력 (308억원):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매출액 5억 이상 중소기업의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R&D 지원
- ③ 전략협력 (594억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R&D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
  - (산연전용)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자체 지원 역량과 연계한 공동R&D 지원
  - (연구마을)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 안에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를 집적하여 공동R&D 지원
  - (지역유망중소기업) 지역유망 중소기업으로 발굴된 중소기업이 동일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공동R&D 지원
- ④ 연구장비공동활용 (106억원):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장비이용료 지원

###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첫걸음협력	최대 1년, 1억 원	75% 이내	자유공모	
도약협력	최대 1년, 1억 원	75% 이내	자유공모	
전략협력	산연전용	최대 1년, 1.5억 원	75% 이내	
	연구마을	최대 2년, 2억 원	75% 이내	품목지정
	지역유망중소기업	최대 2년, 4.5억 원	75% 이내	
연구장비공동활용 (장비이용료)	3천만원 (2천만원 2회 추가 가능)	60~70% 이내	자유공모	

## (8)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보를 동시에 지원
- (네트워크형) 혁신형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과 사업화지원기관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선진시장 진출 역량 확보
- (기술전문기업) 중소기업 R&D 취약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술전문기업과 협력 R&D 촉진을 통해 R&D 사업화 성과 제고

### □ 지원규모 : 1,702억 원

### □ 지원내용

- ① 구매조건부 (1,438억 원): 국내·외 수요처(공공기관, 대·중견기업, 해외기업 등)의 구매 수요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② 네트워크형 (153억 원): 혁신형 기술개발 중소기업 및 사업화 지원 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 ③ 기술전문기업협력 (111억 원): 중소기업 R&D 취약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술전문기업과 협력R&D를 지원

###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구매조건부	최대 2년, 10억 원	60~75% 이내	자유응모·지정공모*
네트워크형	최대 2년, 6억 원	65% 이내	품목지정
기술전문기업협력	최대 1년, 1억 원	65% 이내	품목지정

\* 지정공모: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여 과제수행자를 공모·선정하는 방식

## (9) 중소기업 R&D역량제고

### 사업개요

-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 108억 원

### 지원분야

- ① R&D기획지원 (57억 원):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 R&D기획지원 (49억 원):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과제의 기술 및 시장 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 기획 지원

\* 창업 및 R&D 초보기업을 위한 멘토링과제와 4차 산업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전략과제로 구분 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코칭 (8억 원):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D기획 → 기술개발 → 사업화를 포괄하는 교육 및 코칭실시

\* 교육 과정: 기본 교육(온라인 6H), 일반.전문교육(집합 16H), 방문 교육

- ②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 (51억 원): R&D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공과대학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를 매칭하여 해결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	R&D 기획지원	멘토링과제	최대 2개월, 5백만원	80%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전략과제	최대 4개월, 25.5백만원	75% 이내	
	R&D기획역량강화교육	2일 이내	100%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최대 1년, 30백만원	50 ~ 75% 이내	자유공모	



## (10) 지역특화산업육성

### ① 지역주력산업육성

#### □ 사업개요

-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지원규모 : 802억 원 (신규 246억 원, 계속 556억 원)

#### □ 지원내용

##### ① 주력산업 기술개발 (신규 99억 원, 계속 518억 원)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국비 2억 원당 1명 신규 채용 계획 제출 의무화

#### <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 ② 융복합 기술개발 (신규 147억 원, 계속 38억 원)

-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품에 타산업 분야 기술(ICT, 서비스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주력산업	최대 2년, 6억 원 (연간 3억 원 이내)	70%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융복합	최대 2년, 6억 원 (연간 3억 원 이내)	70% 이내	자유공모

## ②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 □ 사업개요

- 시·군·구의 성장잠재력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규모 : 240억 원 (신규 19억 원, 계속 221억 원)

### □ 지원내용

- ①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신규 19억 원, 계속 207억 원) :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사업화 통합지원
  - (R&D) 지역 특화자원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지원
  - (비R&D) 제품 성능개선, 부가가치 제고,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사업화 지원
- ②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 (계속 14억 원) :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주력·전략산업분야에 대한 연구시설·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개발, 장비활용·교육, 애로기술해결 지원
  - \* '18년부터 사업이 종료되어 계속과제만 지원

###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최대 2년, 10억 원 (연간 5억 원 이내)	70% 이내	자유공모

## (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 사업개요

- 고급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246억 원 (신규 77억 원, 계속 169억 원)

### □ 지원내용

#### ①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100억 원)

- Track1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연구역량 전달 및 기술개발 지원

\*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지원

#### ② 연구인력 채용지원 (146억 원)

- Track2 (93억 원) :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완화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석사 4,000만원, 박사 5,000만원)

- Track3 (53억 원) : 공공연·대학·대기업 등 출신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확대 및 R&D역량 강화

\* 기업 계약연봉의 50% 지원 (최대 5,000만원 한도)

### □ 지원조건

구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Track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년,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50% 이내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
Track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석사 2,000만원, 박사 2,500만원	50% 이내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
Track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최대 5,000만원	50% 이내	

## (12)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 □ 사업개요

- 산업계, 대학 및 정부가 상호 유기적으로 수요자 기반의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공과대학생의 전공역량 강화 등 공대 혁신을 비롯해 고교생의 현장 직무능력 제고 등 기술개발 역량을 확충
-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기업주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

□ 지원규모 : 42.89억 원 (계속 42.89억 원)

### □ 지원내용

- ①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36.59억 원) : 공대 재학생의 기업현장 기반 R&D 실무역량 향상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R&D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지원
- ② 기업주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 (3억 원) : 대졸수준의 공학인력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비즈니스 및 공학기술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활용 종합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마련 지원
- ③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 (3.3억 원) : 바이오 및 정밀기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스위스의 직업교육시스템을 활용, 글로벌 기술인력 (Meister) 육성 모델 마련 지원

###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최대 1년, 6억 원	90% 이내	품목지정
기업주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	최대 1년, 3억 원	100%	-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	최대 1년, 3.3억 원	100%	-

### (13)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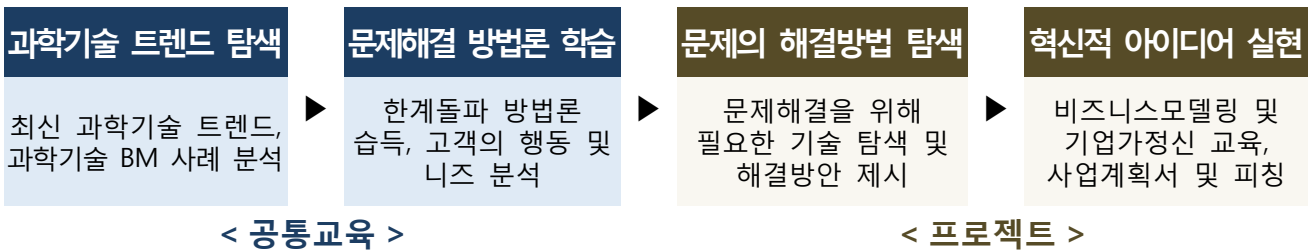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비해 新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갈 ‘청년혁신가’ 양성

\* 청년혁신가: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는 청년 인재

□ 지원규모 : 18억 원

□ 지원내용

- (추진절차) 교육 → 프로젝트 → 창업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취업 지원 (관련 분야의 인턴십·채용기회 제공 등)



\* 교육 및 프로젝트는 160시간 (8주 ~ 12주 내외) 운영

- ('17년 운영규모) 9개 지역\*에서 총 380명의 청년혁신가 육성

\*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경기, 강원, 전북, 경남

구분	교육기간	교육인원	운영센터(명)
1기	5~7월	81명	서울 (33), 부산 (28), 대전 (20)
2기	7~8월	168명	부산 (33), 대전 (16), 광주 (30), 대구 (35), 강원 (19), 경기 (35)
3기	9~11월	131명	서울 (35), 경기 (38), 전북 (36), 경남 (22)
계		380명	

□ 지원대상

- 지역, 사회 및 산업의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청년

## 4. 사업별 문의처

### □ 사업별 문의처

구 분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연락처
기업 성장 촉진	▪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유선 042-1357)
	▪ 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과		
	▪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기술개발과		
	▪ 공정·품질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 WC300프로젝트 R&D지원	기술개발과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02-6009-3511
	▪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재기지원과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유선 042-1357)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 상용화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유선 042-1357)
	네트워크형기술개발			
	기술전문기업협력R&D			
	▪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기술개발과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02-6009-3772, 3764, 3735 02-6009-3721, 3725
▪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기업육성과			
인력 인프라	▪ 지역연고산업육성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02-6009-3772, 3764, 3735 02-6009-3721, 3725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사업	인재혁신정책과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02-6009-3266
▪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지식서비스창업과	한국과학 창의재단	미래인재기획실	02-559-3835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52/50/47/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1/55/58/7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